

의안번호	2210137
의 퇴 인	김도읍의원
회 답 일	2025.5.9.
추 계 번 호	25D2557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3(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)	-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계획 수립, 통합지원의 제공·연대 및 사례관리, 관계 기관·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, 통합지원 관련 조사·연구 및 통계의 관리·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(이하 “통합지원센터”라 함)의 설치·운영 -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3(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(안 제11조의3)

- 개정안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

익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지원업무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통합지원센터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- 참고로 법무부는 2025년 기준 1,448억 7,700만원 규모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 강력범죄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
[표 1]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년도 예산(조정액 기준)
총계	144,877
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	40,005
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	21,442
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	3,450
범죄피해구조금	9,573
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	5,540
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	54,540
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	1,632
성폭력 피해자 지원	39,413
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	13,495
기금운영비	48
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	2,230
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	15
여유자금 운용	48,039
한국은행예치	-
통화금융기관예치	48,039

자료: 법무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